



# 시험확인서

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1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에 대한 시험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합니다.

## 1. 시료내용

시료명	데코믹스	신청자	삼화페인트공업(주) 오진수, 김장연
접수번호	CEB-2018-000010	시료채취 장소	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613-3 (주)더존페인트(OEM사) 참고
시료채취 일시	2018년 01월 11일	접수일자	2018년 01월 10일
시료채취 방법	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관련 지침	검사목적	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시험
대상건축자재	[ ]접착제, [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]페인트, [ ]실란트(sealant), [ ]퍼티(putty), [ ]벽지, [ ]바닥재, [ ]기타		

## 2. 오염물질 방출 시험 결과

### 가. 검사결과 종합

판정	적합
기준 초과항목	없음

### 나. 항목별 검사결과

검사 항목	기준(mg/m <sup>2</sup> · h)	시험결과(mg/m <sup>2</sup> · h)
TVOC 방출량	2.5 이하	0.360
톨루엔 방출량	0.08 이하	검출한계 미만 (검출한계 : 0.005)
폼알데하이드 방출량	0.02 이하	검출한계 미만 (검출한계 : 0.005)

2018년 02월 06일

**KTR**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



위변조 확인용 QR code